

① 국비진료 대상자 (본인부담 진료비의 100% 지원 대상자로 일부 예외조항 있음)

구 分	적용대상자	관련법률	의료지원범위 [보훈 · 위탁병원]	비 고
애국지사	일제 국권 침탈 전후로 '45.8.14.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자	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(제17조)	상이처 및 일반 질병 (부상 포함)	
국가 유공 상이자	전상군경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	상이처 및 일반 질병 (부상 포함)	하단 *참조
	공상군경			
	4.19혁명부상자			
	공상공무원			
	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			
	6.18자유상이자			
고엽제 후유증 환자	월남전 참전 및 국내남방 한계선 지역에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을 앓은 자	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6, 7조)	1) 장애등급 판정 시 부상을 포함한 모든 질병  2) 장애등급 외 판정 시 인정질병 및 합병증	하단 *참조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	월남전 참전 및 국내남방 한계선 지역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을 앓은 자(고도, 중도, 경도 등외)			
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	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 고엽제 후유증 2세 질환을 앓은 자			
5.18 민주화 운동 부상자	5.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	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(제34조)	상이처 및 일반 질병 (부상 포함)	하단 *참조
특수임무부상자	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상이를 입은 자	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(제33조)		
재해부상군경	군인, 경찰,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	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	상이처 및 합병증	
재해부상공무원	공무원이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			
상이등급 미달 재해 부상 군경 등	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으로 신청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3조의 2)	상이처	
상이등급 미달 전 공상 군경 등	전공상군경, 4.19 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.18 자유상이자, 전투종사 군무원으로 신청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			

- \* 1) '12.7.1. 이후 신청한 7급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 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 상이자는 상이처외 진료를 받는 경우는 본인부담액 10% 발생
- 2)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중 본인의 고의 및 과실, 타인에 의한 위해, 군복무전 발생, 유전(2세환자 제외)에 따른 발병은 진료지원에서 제외함
- 3) '16.6.23 이후 신청한 고엽제 후유의증(2세포함) 중 경도판정자; 5.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중 12~14 등급 판정자, 특수 임무 부상자 중 7급 판정자가 상이처 외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액 10% 발생